업 무 협 약 서

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과 국립안동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는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복지 활성화로 지역 취약계층(교육복지대상, 다문화가정 학생 등)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·학습 역량을 기르고,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로 길러내는 데 있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기관의 법령과 규정 등이 허용하는 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,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1.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학생 추천 및 지원
2.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사업 관련 멘토, 멘티 발굴 및 지원
3.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학교시설 및 기자재 제공
4.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
5. 양 기관의 사회적 책임실천 및 기관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4조(업무협의) 양 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,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1.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의 종결이나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요청 받은 기관은 3개월 이내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효력)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7월 2일

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

교육장 이정희 이정희

국립안동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

센터장 이기용 이기용